

의안번호	제 46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6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아울러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→ 제33조(안 제1조)
- 2) 「동법시행령」 제15조 → 제33조(안 제1조)

나.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1) 월정수당 월 1,416,000원 → 2,130,18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3조 및 같
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월 1,416,000원”을 “월 2,130,180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
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국외여비지급 기준표(제7조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 비	숙박비	식 비	준 비 금		
					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·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	·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	1 등 정액		35	166	107	140	170	195
의 원	·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액 ·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 로 하는 경 우에는 그 실비액	·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액 ·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액	2 등 정액	실비액	30	145	81	130	155	180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32조</u> 및 동법시행령 <u>제15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33조</u> <u>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<u>월 1,416,000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월 2,130,180원</u>-----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